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를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으로 규정〉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99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지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07. 30.
3. 회 부 일 : 2024. 07.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사전에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 예외로 관할경찰관서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야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이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시위에 참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있었음(2010헌가2, 2011헌가29 등).

한편, 선거기간 중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녹음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야간의 옥회집회 또는 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u>해가 뜨기 전 이나 해가 진 후에는</u>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 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 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u>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u> 옥외집 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 <u>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u> ----- ----- -----. ----- ----- ----- ----- ----- ----- <u>오후 9시 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도</u> -----.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관련하여 ‘일몰 후 일출 전’이라는 광범위한 시간대를 옥외집회의 금지 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거나 명목상의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하였음¹⁾).

개정안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되는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한정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시위의 자유 사이의 조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2014년 헌법재판소가 같은 조 ‘시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작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다는 점²⁾을 고려할 때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를 시위 금지 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45

1)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2)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결정